

# u-성동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성동구 관내에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통합관리를 위해 구축한 “u-성동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성동경찰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시설물 및 장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로 한다.
- ② 다목적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방범(차량번호수집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설물관리, 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서 다목적(방범,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시설물관리, 재난) 활용을 위해 단일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적법한 목적 확대 절차를 거친 CCTV를 말한다.** 성동구의 다목적 CCTV는 [별표1]과 같다.
- ③ **통합관제센터**란 성동구 관내에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비 및 시설물과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설물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업무관련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물품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비치되어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목적)** CCTV는 성동구 관내에 방법(차량번호수집 포함),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시설물관리, 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한다.

**제4조(설치 등)** ① “갑”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고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한다.

② “을”이 CCTV를 설치할 경우 통합관제센터 내 상호 호환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성동구 관내에 설치한 CCTV 등 시설물과 장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다만 “을”이 설치한 장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6조(관리 및 유지보수)**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갑”은 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7조(위치)** 통합관제센터는 성동구 고산자로270(행당동7), 성동구청 본관5층 “U-성동 통합관제센터”(면적204㎡)에 위치한다.

**제8조(설치목적)** 통합관제센터는 성동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통합 운영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① “갑”은 통합관제센터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되 “을” 과 협의하여 [별표2]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② “을”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에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관 1명 이상을 24시간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을 위해 자치단체 모니터링 요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을”은 CCTV 관제에 필요한 모니터링 요원을 “갑”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 및 운영시스템 교육 등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무태만 또는 자질 등 자격문제 발생 시 “을”은 “갑”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통합관제센터 내 운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동일한 시스템을 성동경찰서 112 상황실에 설치·운영하며 “을”은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조치 및 대응시에만 관련 영상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10조(관제의 범위)** “갑”이 설치한 CCTV에 대한 관제업무는 “갑”이 운영 관리한다.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관제 중 각종 사건·사고가 확인되면 “을”은 신속한 상황 판단 및 112순찰차의 현장 출동 지시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① 수사 목적 등으로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시 “을”은 CCTV 영상정보를 우선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고 발생시 “을”은 “갑”이 구축한 영상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받으며 “갑”이 구축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CCTV 활용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유지보수 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제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기타사항

**제13조(손·망실 및 배상책임)** ① “을”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과실로 시설물과 장

비 등을 손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책임을 진다.

1.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2.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배상명령이 있는 후에 법원의 배상판결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이행의무 및 책임)** ① “갑”과 “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을”이 “갑”에게 다목적 CCTV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경우 “갑”은 관계법령에 위반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은 다목적 CCTV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갑”과 “을”은 업무수행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종료 및 중도 해지)** ① 협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파기할 수 없다.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하거나 운영이 중단 될 경우
3.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모든 권리와 의

무는 상실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인 “갑”과 “을”은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간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제1조(기관장 변경과 효력)**

“갑”과 “을”의 기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은 유효하다.

협약체결일 : 2014년 10월 30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70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로9

기관명 : 성동구

기관명 : 성동경찰서

구청장 : 정 원 오 (인)

서 장 : 이 영 상 (인)

[별표 1] 성동구 다목적 CCTV 운영 현황

## 성동구 다목적 CCTV 운영 현황

(2014.10. 현재)

부 서	주목적	개 소	대수	주목적 외 용도	비 고
자치행정과	방법	315	750	1. 불법주정차 단속 2. 쓰레기투기 단속 3. 시설물 관리 4. 재난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77	167	1. 방법 2. 불법주정차 단속 3. 시설물 관리 4. 재난	
	그린파킹	49	49	1. 방법 2. 불법주정차 단속 3. 쓰레기투기 단속 4. 시설물 관리 5. 재난	
교통행정과	자전거보관	9	20	1. 방법 2. 불법주정차 단속 3. 쓰레기투기 단속 4. 시설물 관리	현장저장
공원녹지과	시설물관리	34	43	1. 방법 2. 불법주정차 단속 3. 쓰레기투기 단속 4. 재난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	33	33	1. 방법 2. 불법주정차 단속 3. 시설물 관리 4. 재난	이동형
성동경찰서	방법	7	7	1. 방법	
합계		524	1,069		

[별표 2] u-성동 통합관제센터 업무 분장

## u-성동 통합관제센터 업무 분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처리자	비 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상황발생	비상벨 대응 및 현장 출동	성동경찰서	주간(유지보수 요원), 야간(모니터링 요원)
		u-서울 안전서비스	성동구	
		지능형 이벤트	상황인지(성동구), 상황판단 및 대응(성동경찰서)	
		수배도난차량 대응	성동경찰서	
	출입관리	시스템실	성동구	전산정보과
		상황실		
	영상정보 관리	방범용CCTV(공원포함)	성동구	영상정보제공시스템
		불법주정차, 그린파킹CCTV		
		쓰레기무단투기CCTV		
		개인영상정보열람	성동구	전산정보과
	유지보수	고장·장애발생	성동구	